

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컨설팅 안내

☑ 법적 근거

-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(보건조치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(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)
-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

☑ 실시 대상

-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



☑ 실시 시기

최초 평가

- » 사업장 신설, 사업의 개시 등 최초 실시
- »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 [대상: 전체 작업]

정기 평가

- » 근골격계부담작업(총 11가지)을 하는 경우 실시
- » 최초평가 후 매 3년마다 실시[대상: 전체 작업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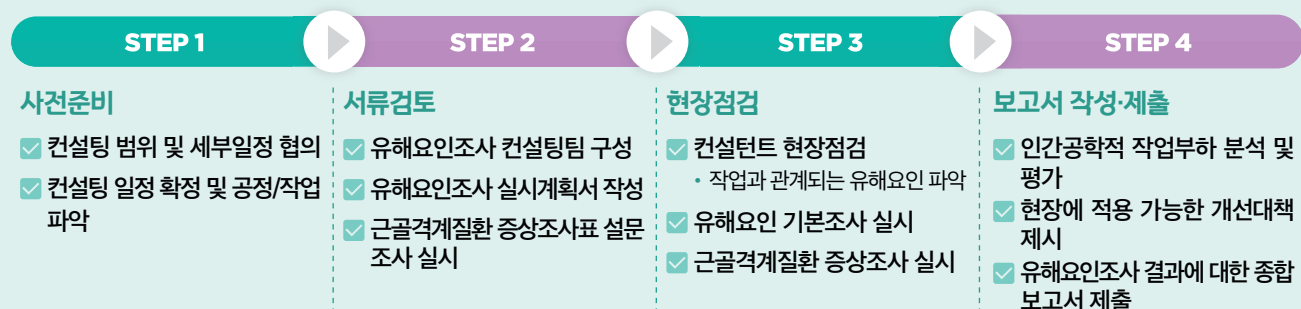
수시 평가 (사유 발생 시)

- » 근골격계질환자 발생
- »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·설비 도입
- »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량, 공정 등 작업환경 변경

☑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절차



☑ 컨설팅 수행절차



MISSION & VISION

MISSION

우리는 안전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

VISION

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최고의 종합컨설팅기관

☑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

위반행위	세부내용	벌칙
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68조 (벌칙)	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


대한산업안전협회
Korea Industrial Safety Association



